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숭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2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 백승아·김남근·김동아

김준혁 • 박해철 • 박홍배

오세희 • 이광희 • 이훈기

임광현 · 임미애 · 조인철

최기상 · 황정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 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,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.

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,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정보통신망에 장기간 유통될 가 능성이 커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 우 중요함.

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

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4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4제2항 전단 중 "대리인"을 "대리인(이하 이 조에서 "삭제지원요청자"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"을 "삭제지원요청자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의4(사이버폭력의 피해자 | 제16조의4(사이버폭력의 피해자 |
| 지원) ① (생 략) |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, 그 | 2 |
|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 | |
| 호자가 지정하는 <u>대리인</u> 은 국 | <u>대리인(이하</u> |
| 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| 이 조에서 "삭제지원요청자"라 |
|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| 한다) |
| 우 <u>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</u> | |
|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 | <u>삭제지원요청자는</u> |
|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 | |
|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. | |
| | <u>.</u> |
| <u><신 설></u> |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|
| |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에 대 |
| | 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 |
| |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 |
| |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 |
| | 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|
| |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 |
| | 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|
| 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 | 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 |
| | 과 같음) |
|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 | <u>⑥</u> |

| 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,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 | <u>제5항</u> |
| 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 | |
|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 |